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위반사실의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 위반사실의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2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6.

3. 회부연월일 : 2025.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Ⅲ. 검토의견

1. 법 위반사실의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의 보조금 반환, 시정명령 등 법 위반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 ----- ----- ----- ----- ----- --교육부 인터넷-----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의2¹⁾는 관할청(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에게 유치원의 현행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보조금 등의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명단의 공표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일정한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법률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훼손을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짐.²⁾

1) 「유아교육법」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 4. (생략)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 2의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³⁾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등을 공표하고 있는데, 그 공표 주체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에 대한 교육부 홈페이지 공표]

○ (공표 항목)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 아닐 경우),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주소

○ (공표 위치) 교육부 소식 → 명단공표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4조의2)

② 위반사실의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번호	공표업무	등록일	조회
155	어린이집(부산 수영구)	2025-08-28	40
154	어린이집(경기 용인시)	2025-08-06	208
153	어린이집(서울 은평구)	2025-08-01	101

*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2)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년 5월, 국회사무처 법제실, p. 434 참고

3)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 5. (생략)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 1: 유치원 알리미 공시 현황 >

-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유치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공표제도 외에도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유치원 정보공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정보공시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참고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령 >

- 이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유치원 등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정보 바로가기’를 통해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로 연동이 가능하고,

‘유치원 알리미’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유치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특정한 유치원을 선택한 후 공시 항목 중 ‘평가·자율공시 등’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린이집과 같이 위반사항에 대한 유치원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유치원 알리미 공시 정보]

○ (공표 위치)
유치원알리미
→ 유치원·어린이
집 조회 → 평가·
자율공시 등 →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 자료: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여 유치원의 위반 사실 등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면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하는 한편,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투

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표 주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립·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례와 같이 공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현행과 같이 공표 주체인 관할청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교육부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서울, 인천, 울산, 강원, 경북) 소속 유치원 27개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치원 알리미 기능 강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시방법 표준화·연계 등을 통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정보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1

유치원 알리미 공시 현황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공시개요	유치원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 유치원별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유치원 관련 국가 통계 확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교육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 되는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대상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
정보공시 항목	-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알리미) 개통 - 7개 항목, 23개(수시 3종, 정시 20종)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 공시 -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유아·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황, 환경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공시

* 자료: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https://e-childdschoolinfo.moe.go.kr/main.do>) 참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 7. (생략)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12. 26.>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의2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가. 일반 현황			
	1) 기관 기본현황	전체	연1회	4월
	2) 유치원 규칙	전체	수시	수시
	3) 원장명, 설립·경영자명	전체	연 2회	4월, 10월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지(校地)·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전체	연1회	4월
	가. 연령별 학급수·원아수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교직원 현황			
	1) 직위·자격별 교직원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전체	연2회	4월, 10월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4월
	나.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4월
	다. 수업일수 현황	전체	연1회	4월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			
	1)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전체	연2회	4월, 10월
	2) 특성화 활동비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전체	각 연1회	(예산)4월 (결산)10월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적립금 현황	사립	연 1회	(결산)10월
	가. 급식관리 현황			
	1)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전체	연 2회	4월, 10월
	2) 식단표	전체	수시	수시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전체	연 2회	4월, 10월
	다. 안전점검 현황	전체	연 2회	4월, 10월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전체	연 1회	4월
	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전체	연 2회	4월, 10월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4월

비고

1. "공시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공·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시하고, 사립 유치원은 '사립'으로 표시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4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10월에 각각 공시한다.
4. 삭제 <2023. 12. 26.>